

주식회사 **GS** 글로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21. 5. 31.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1.1 의의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구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자 행동규범이다.
- CP는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개선을 통한 관련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운영 필요성

1.2.1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 강화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들이 자율준수 노력을 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 임직원을 대상으로 CP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내재화하여 준법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1.2.2 경제적 손실 방지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발생 전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과징금, 소송비용, 손해배상 등의 경제적 부담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

1.2.3 대내외 신뢰도 제고

- CP 도입을 공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준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1.2.4 다른 준법지원제도와의 시너지 효과

- 내부경영진단, 준법지원인 등과의 시너지 효과로 높은 효율의 준법시스템을 달성할 수 있다.

2. CP 도입 요건

- CP는 기업의 경영활동, 사업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형태가 기업별로 상이하므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도 CP 도입 여부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서 CP도입에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2.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2.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2.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CP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6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2.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2.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및 이에 대한 대응 절차

I.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1. 개요

1.1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킨다.

1.2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

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

1.3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한다.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한다.

1.4 경제력 집중 억제

- 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 공정거래법

2.1 공정거래법의 목적

-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2 공정거래법의 구조

-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의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데,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에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 두 가지 측면 - '시장구조'와 '거래형태'- 이 중요하다.
- "시장구조"란 일정한 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각 참

여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독점’이란 시장 내의 사업자가 하나이고 그 점유율이 100%란 뜻이고, ‘과점’이란 시장 내의 사업자가 소수이고, 그 사업자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의 시장구조 하에서는 경쟁이 없거나 치열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 “거래형태”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담합을 할 경우에는 시장 내의 사업자가 여럿이 있더라도 상호간에 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업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정하게 되며, 그 결과 독점적인 시장구조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가 소비자에게 혹은 경제 전체에 생기게 된다.

2.3 공정거래법의 규제 유형

시장구조의 개선	거래행태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경제력집중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금지 - 채무보증의 금지 및 보증 해소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결 및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 거래조건·대금지급조건결정 - 생산·출고·거래 등의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2.4 적용 범위(사업자)

◦공정거래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이다(법 제2조 제1호). 판례는 사업자를 자기의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과 관련된 각종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다.

II.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1.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 기능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법 제37조의2, 제42조 제1항)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법 제37조의2, 제42조 제2항)
소관사항	- 법규 등의 제·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법 제37조의 3)	- 일반사건 - 승인 · 인정 · 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1.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1.2.1 인지단계

- 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 가능 (법 제 49조)
- 위반혐의는 직권인지가 원칙이고,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
- 신고 접수 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

1.2.2 조사·심사 단계

-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
-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 회의에 상정

1.2.3 심의·의결 단계

-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 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
- 합의는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위법여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 · 합의하는 과정 (법 제43조)

1.2.4 의결 결과 통지

-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이로써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 (법 제45조)

1.2.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음

1.3 불복절차

1.3.1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30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법 제53조)
- 시정조치 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 (법 제53조의2)

1.3.2 행정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법 제54조, 제55조)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2.1 조사 주체

- 사무처 소속의 사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5개 국(경쟁정책국/시장감시국/카르텔 조사국/소비자정책국/기업거래정책국)과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2.2 조사 단서

- 사건의 조사는 ‘신고’ 또는 조사관의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되며, 직권발동은 주로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조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과 같이 연초에 조사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이뤄진다.

2.3 배당과 사전심사

- 신고 또는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된 개별사건은 담당과정에 의해 개별 조사공무원에게 배당되며, 배당 받은 조사공무원은 당해 사건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사전심사하며, 사전심사결과 ① ‘피조사인이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②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③ ‘5년의 조치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불개시결정”을 내리며, 사전심사 결과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착수보고”를 하게 된다.

2.4 사건번호·사건명 부여와 조사의 실시

- 사건착수보고가 이뤄지면, 심판관리관실에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함으로써 정식으로 하나의 조사사건이 되며, 이후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2.5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 약식절차 회부

* ① ‘심사관조치의견에 고발이나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된 경우’ 또는 ② ‘피심인이 심사관 조치의 견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

- 위원회 상정

3.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응절차

3.1 사전예방 대책으로서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예방책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은 기업과 관련 임원 및 직원 개인의 형사상 면책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준수 및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의 특정 조직, 운영, 요원 및 영업 관행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예방 및 적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율적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조사개시 전 단계

3.2.1 내부적인 조사의 필요

(1) 내부적인 조사시행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회사는 자신이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경영진은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며 내부적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보다는 내부적인 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의 내용과 가능한 파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더 권장할 만한 조치이다.

(2) 내부적인 조사절차 확정

- 회사 내부의 조사절차는 매우 신중하게 정하여야 하며, 경영진단팀/법무팀/자율준수관리자 등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회사는 직원들에 대하여 꼭 필요한 조치만을 취하고, 과도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와 관련된 결재라인을 확정해 놓아야 한다.

(3) 문제가 되는 행위의 확정

-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그 후의 형사,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4) 위법행위에 관련된 직원에 대한 태도 확정

- 조사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혐의가 있는 직원의 휴직, 휴직 시 임금 지급 문제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 및 그 논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3.3 조사개시 후 대책 - 사건의 파악 및 적절한 대응조치

3.3.1 개요

- 조사가 개시된 경우 회사는 즉시 다양한 경로로 조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행위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조사개시 전의 사실파악과 중복될 경우도 있으나, 조사개시 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회사는 다른 조사 대상자들과 공동대응 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해서 그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로 정확한 정보수집 및 그에 기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3.3.2 사건의 파악: 사실관계의 파악 및 변호사 선임

(1) 사내 자료 보존 및 수집

- 우선적인 과제는 관련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서류 및 이메일을 파기 또는 삭제하지 않도록 그 회사의 경영진단팀/법무팀/자율준수관리자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잘못하여 관련 자료를 파기하다가 추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에게 조사의 성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경영진단팀/법무팀/자율준수관리자 등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과 이에 관하여 의논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접촉

- 다음으로 할 일은 경영진단팀/법무팀/자율준수관리자 등을 통해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이다. 보통은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조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당국이

어느 정도의 혐의 및 정보를 갖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진전도에 따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직원 인터뷰

◦ 서류를 수집하고 조사하기 이전에라도 가능한 한 빨리 직원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몇 명이나 관여했는지, 아니면 혐의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필수적이다.

(4) 비슷한 위치에 있는 회사/개인 접촉

◦ 또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비슷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들과 접촉하는 것이다. 경쟁 회사일 경우, 민감한 사항에 있어 쉽게 신뢰해서는 안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및 회사의 입장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 사외 변호사 및 외부 전문가 조력

◦ 형사 소송 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하여는 사내 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행동 요령

4.1 현장조사 시

4.1.1 사전통지가 있는 경우

◦ 사전통지여부에 대하여 문서 수령을 철저히 하고, 조사할 내용을 미리 보내오는 경우 그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되 임의적인 가감이 없도록 주의한다.

4.1.2 사전통지가 없는 경우

◦ 조사관 신분을 확인하고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조사편의에는 최대한 협조하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 향후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을 남겨 놓는다는 취지에서 공정거래

위원 회에 문서를 통한 이의제기도 고려할 만한다.

4.2 자료제출 요구 시

- 제출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자료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요구된 자료만 최소한으로 제출하되, 반드시 사본을 남겨 놓아야 한다.
- 회사의 입장 등에 대한 보충설명자료 제출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자료를 성급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금물이다.

4.3 출석진술 요구 시

- 어떤 건에 대한 조사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준비(구체적 자료의 확인 등)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병상의 문제나 출장 등의 일정이 잡혀 있을 경우 출석일자의 조정이 가능하나, 고의적으로 진술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안된다(조사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진술서, 확인서, 진술조서 작성 관련하여 실무관행상 진술자가 자필로 작성하기 보다는 조사관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진술자의 의도와 다른 내용이 진술서와 확인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업무별 유의사항

I. 계열사간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1. 특수관계인 이익제공금지 (법 제23조의2)

1.1 개요

(1)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개인이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비상장 20%)이 상인 회사와 거래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 의결권 유무는 무관하며, 직접지분만 계산한다.

- 법 제23조와 달리 공정거래저해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지원주체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를 말한다.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의 거래상대방인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이어야 한다.

- 특수관계인: 동일인(총수) 및 그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에 한정한다.

- 지분 계산시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이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인 없이 동일인의 친족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일반주, 우선주, 자사주 등을 모두 포함한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 지원객체가 특수관계인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서 규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정책과)에서 지정한다.

(2) 위법성 판단기준

◦ 부당성

- 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발생
- 부당한 이익의 특수관계인에의 귀속
 - 상당성
-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실제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이고,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상당한 규모의 물량 : 평균매출액의12%이상이고,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2 내용

1.2.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헐값제공 또는 고가매입)

(1) 대상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 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2) 적용제외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위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 차이와 거래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①거래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② 정상적인 거래 조건 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법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품·용역 거래에서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라도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

이면 법 적 용대상이 된다.

(3) 유형

- 지원주체가 광고 판매 수익을 창출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게 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계약상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면제하여 주는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통하여 소모품 등을 구입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매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과도한 유통 차익을 얻게 한 경우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로 지원을 하는 경우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지원을 하는 경우
- 기업 어음 고가 매입
- 회사채 고가 매입
- 주식 고가 매입
-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의 고가 매입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4) 업무 시 유의사항

[Yes]

-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격을 산정·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지원금액의 비율 및 금액이 적용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지원 시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 정상금리(지원객체 외 독립금융기관 간의 정상 적 거래에 적용되었을 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의 차이가 7% 미만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부동산을 임대차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임차료를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No]

-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말아야 한다.
- 고가매입,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말아야 한다.
-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하지 말아야 한다.
-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가를 치르고 산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
-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아야 한다.

1.2.2 사업기회제공

(1) 대상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란,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한다.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업기회 제공 당시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다.
- 회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 수행할 사업'에는 ① 사업기회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 뿐 아니라, ②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되며, ③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 검토단계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까지 포함된다.
- '밀접한 관계'여부는 회사의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지 여부, 본래 사업과 전·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사업인지 여부, 회사 재산의 공동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사업기회 제공은 회사가 사업양도 등을 통해 지원객체에 사업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2) 적용제외

- ①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법률적 불능 또는 경제적 불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에게는 법적으로 진출이 금지된 사업인 경우에는 '법률적 불능'으로 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을 것이며, 사업기회 검토 당시에 회사의 재정적 능력이 악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경제적 불능'으로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

◦ ②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는 당해 사업기회가 지니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당해 사업기회의 시장가치는 사업기회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며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당해 사업기회의 시장가치는 사업기회 제공이 이루어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에도 법 적용이 면제된다. 다만, 이사회 승인 또는 이사진의 경영판단을 통해 사업기회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러한 의사결정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3) 유형

◦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을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

(4) 업무 시 유의사항

[Yes]

- 사전 계약체결 전에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에 대한 입증 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 과도한 수수료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No]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거래단계에 추가시켜 수익을 귀속시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1) 대상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총수일가)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지원 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다.

(2) 적용제외

◦ 거래당사자 간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예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평균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 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①효율성, ②보안성, ③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된다.

①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를 말한다.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이 부품이나 소재,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의 품질 혹은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계열사가 된 것이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거래 시 종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 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공장·연구개발시설·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 할 수 있다.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를 말한다.

- 긴급성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보안성 사유를 판단할 때보다 더욱 엄격 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사회적 변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단순히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공여

- “통상적이고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할 경우 정상가격 거래도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일반부당지원행위로서 물량몰아주기와 달리 ‘상당히 유리한 조건’ 및 ‘부당성’ 이 불필요하다.

(4) 업무 시 유의사항

[Yes]

-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쳐서 상당한 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No]

- 계열사에게 물류업무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어서는 아니 된다.
- 계열사간의 거래물량의 확보만으로 사업의 위험성을 제거되는 거래를 피하여야 한다.
- 계열사간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 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일반부당지원행위의 금지(법 제23조 1항 7호)

2.1 개념

(1) 부당한 지원 행위

◦ 지원주체(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특수관계인 등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 지원행위 여부 판단기준인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인간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추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정상가격 입증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지원의도가 엇보이는 정황증거가 있거나 제3자간 거래라면 나타나지 않을 협상 또는 거래방식이 있을 경우 지원주체가 정상가격임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기준

-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

- 경쟁사업자 배제우려

-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시장진입 저해

◦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으로서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2.2 유형

2.2.1 자금지원행위

(1)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발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
-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일반정상금리) 차이가 후자의 7% 미만,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유형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3) 업무 시 유의사항

[Yes]

- 기간이 특정되어지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한다.
-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No]

-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의 차이가 7%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아야 한다.

2.2.2 자산지원행위

(1) 정상가격(시가)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유형

-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수령을 지연한 경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 한 경우

(3) 업무 시 유의사항

[Yes]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의 지원은 가능하다.
- 임대료 산정 시 당해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계열사간 부동산을 임대차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차료를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No]

-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 계열사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2.2.3 상품 및 용역지원행위

(1) 상품, 용역거래의 경우,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유형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하인수행위,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원재료의 고가매입
- 대금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3) 업무 시 유의사항

[Yes]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의 조건은 비특수관계인의 거래조건과 비교한다.
- 상품·용역거래 시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격을 산정·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계열사 지원 시 지원주체에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No]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계열사에게 무료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2.2.4 인력지원행위

(1) “정상급여”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하였다.

◦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 매출액이 차지 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하였다.

(2) 유형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3) 업무 시 유의사항

[Yes]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No]

- 계열사의 인건비를 무상으로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2.2.5 물량몰아주기

(1) 개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계열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물량을 몰아주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판단 기준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정당화 사유 고려: 당해 거래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3) 유형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으로 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되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상 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며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

(4) 업무 시 유의사항

[Yes]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 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수의계약의 필요성).
- 수의 계약은 보안성, 긴급성,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정상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가격에 따라야 한다.
-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되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므로,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 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수의계약의 필요성).
- 수의 계약은 보안성, 긴급성,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정상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가격에 따라 야 한다.
- 적정가격 산정 시 내부와 외부거래시의 이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No]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으로 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열사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어서는 아니 된다.
- 계열사간의 거래물량의 확보만으로 사업의 위험성이 제거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열사간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 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2.2.6 통행세

(1) 개념

-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

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유형

-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전혀 혹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
-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그 대가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3) 업무 시 유의사항

[Yes]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이 입증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는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당사의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사에는 그 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중간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과 거래관계의 변동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No]

-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추가시켜 수익을 귀속시키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체크리스트

3.1 특수관계인 이익제공금지

3.1.1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및 상품 등의 부당한 이익 지원

- ✓ 부동산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계열회사와 거래 시 비계열사의 금액 조건과 7%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가?
- ✓ 상당히 유리한 조건(할값제공 또는 고가 매입)의 거래인가?
-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는가?
- ✓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제공하였는가?
-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 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가?

3.1.2 기타

- ✓ 계열사와 매출 거래 시 계열사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당사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였는지를 근거자료(품의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가?

3.2 일반부당지원행위

3.2.1 자금 지원

-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였는가?

-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3.2.2. 자산 및 상품 등의 지원

- ✓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 업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였는가?
-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앞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는가?
-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였는가?
-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았는가?

3.2.3 인력지원

- ✓ 계열사에 대하여 인력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였는가?
-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 하였는가?

3.2.4 물량몰아주기

-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 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는가?

-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였는가?
-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3.2.5 통행세

-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II. 대규모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1. 개요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 내부거래(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 자금·유가증권·자산 및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공시해야 한다.
- 상법규정에 의한 이사회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 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상장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법 위반 시에는 유형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처해진다.

2.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법 제11조의2)

2.1 공시 대상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회사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말한다.

-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포함된다.
 - 해외현지법인은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다. (현재 유예 中)
- 거래당사자 모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여야 하며, 일방당사자에게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만 이사회 의결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 특수관계인의 비영리법인과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한다.

2.2 대규모 내부거래 유형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거래하는 행위와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혹은 그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하여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를 상대로 거래금액 50억 원(또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상의 상품·용역거래(매입·매출합산)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한다.
 - 자금거래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유가증권거래란 ①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 자산거래란 ①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부동산 임대차 거래도 포함된다.
 - 상품·용역거래란 회사의 상품거래, 용역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로서 손익계산서 상에 매출액, 영업수익으로 계상되는 거래를 말한다.

2.3 공시내용

- 거래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거래에 한함),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이다.

2.4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

-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은 ①MAX [자본금, 자본총계] X 5% 이상이거나 ② 5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 자본금이란 이사회 의결일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한다(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 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봄).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재표에 표시된 자본총계

(1) 거래금액

-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공시규정 제4조 제2항)

-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시에는 ①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본다.

- 상품·용역거래시에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① 부동산 임대차: 연간임대료 + 환산 연간 임대료 (=보증금X이자율)

*관리비는 제외,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 (매년 개정)

② 담보제공: 담보한도액

③ 보험계약: 보험료 총액

(2) 거래상대방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이다.

[특수관계인]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하 “동일인”)

(2) 동일인 관련자(①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② 계열회사, ③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 자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또는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회사의 임원 등),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계열사 A가 거래상대방인 계열사 B와 자금의 차입·대여거래, 상품·용역거래 등을 하는 것은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②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 계열사 A가 발행한 주식, 채권을 비계열사를 통해 계열사 B가 매입하는 경우 계열사 B는 계열사 A를 위한 거래(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로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3)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채권·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이나 카드결제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해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다만, 장 종료 후 시간외거래는 공시대상)

- 자산운용사와 계열증권사간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 체결

2.5 이사회 의결절차

-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회 내 위원회가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가 3인이 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6 공시 시기

- 상장법인 :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
-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2.7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공시여부

-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이 없는 경우
 - 특별한 사정(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어야 함)에 의해 일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없음
 -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기간 방치하여 사실상 계약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있음

2.8 이미 공시한 주요내용의 변경

- 이미 공시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2.9 참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미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하여야 함

-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자금 자산 거래 취소 시(100% 금액변경) 다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을 면제하고 거래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하면 됨('21년 중 개정 후 즉시시행 예정)

2.9 주요내용의 변경

-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 거래금액, 거래단가, 약정이자율 등이 당초보다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보며,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 거래상대방 변경의 경우 상호변경, 영업양수도, 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만 하면 됨
-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3. 위반 시 제재

-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 별 기본 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위반 유형				
이사회 의결 여부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누락 또는 허위 공시여부	기본 금액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2,000
			누락 또는 허위	500(공시기한을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 지난 후 보완한 경우	넘기는 날의 다 음날부터 1일마 다 10만원씩 가 산하되, 2,000만 원초과 불가)	
			기한을 넘긴 경 우	정확하게 공시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 음날부터 1일마 다 10만원씩 가 산하되, 5,000만 원 초과 불가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	정확하게 공시한 경우	5,000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7,000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4.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예시

4.1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 관련

1. 거래의 당사자 중 한 회사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두 회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하는지?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회사의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거래상대방의 거래행위가 기준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발생한 거래 당사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면 됩니다.

2.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연장 없이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 이사

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 만기가 도래한 발행어음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만기연장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는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금하지 않고, 그 기간이 장기화되어 만기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거래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3.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 출금하지 않고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만기가 도래한 발행어음에 대해서 출금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4.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50억원 이상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출자금액이 50억원이상이더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5. 부동산임대차 계약시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상향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여부?

→ 변경계약은 새로운 거래에 해당되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1일 이내(비상장은 7일 이내)에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6. 부동산 매매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한 후 추가적으로 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거래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

→ 당초 의결, 공시한 행위와 추가로 발생한 행위 간에 거래대상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거래대상이 동일할 경우(예: 동일 토지의 거래금액만 변경)에는 추가 거래금액이 당초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변동이 있다면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대상이 다를 경우(예: 당초 계약분 토지의 인접토지거래)에는 추가거래는 당초 거래와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행위이므로 추

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에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차 금액이 상향조정 되어 대규모거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8.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으로 편입되기 이전의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규모내부거래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으로 편입된 이후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로 편입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 하여도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한 상품용역거래 등 분기별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거래이거나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으로 편입되기 전 거래금액, 거래일시, 거래방법 등이 명시된 세부 거래조건이 아닌 단순 약정형태로 체결하고 있던 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으로 편입된 이후 세부 거래조건 등을 별도 체결한 거래이거나, ③ 당초 거래조건이 변경되는 거래라면 거래 개시 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9.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해서 계열사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공시대상인지의 여부?

→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해서 계열사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입니다.

10. 공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외계열회사와 대규모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는지?

→ 현재, 국외계열사 공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개정 공정거래법 및 하위 규정이 확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국외계열회사간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국외계열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4.2 거래금액 산정 관련

1.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이 하루에 발생하는 총거래금액인지 아니면 1회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금액인지의 여부?

→ 거래금액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1회의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금액입니다. 그러나 주식 거래의 경우 1회 거래라는 개념이 모호하므로 1일 매입 또는 매도 금액의 총합계를 1회 거래로 봅니다.

2.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기준이 입/출금 금액 합산인지 아니면 입금액인지의 여부?

→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입금액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고 일정한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출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3.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거래대상과의 거래를 수차례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처리 관계는?

→ 동일 거래대상과의 동일목적의 거래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외부회피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 등을 통하여 적발되면 불성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되어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3 동일거래의 범위 관련

1. 당사가 동일 거래상대방과 아래와 같이 거래일을 다르게 하여 유가증권 등을 거래할 경우 거래일이 다른 복수의 거래를 동일한 거래로 보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지? 4월 12일 40억원을, 4월 14일 10억원을 거래하여 거래금액의 합계액은 50억원임(당사의 자본총계는 1,000억원임)

→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거래대상 1건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동일목적을 위한 동일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이루어진 거래라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아래 예시와 같이 계열사가 동일 운용사의 같은 성격의 수익증권 상품을 판매사를 달

리하여 입금하는 경우 동일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계열사 자본총계 1,000억원) 예) AB르네상스1-20호를 계열투신증권사에 20억원, 계열증권사에 10억원을 입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다르므로 위의 예시와 같은 경우 동일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위 예시와 같은 경우 각각의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공시대상거래가 아닙니다.

4.4 상품 용역거래 관련

1. 계열회사 A와 ERP등 시스템 구축용역 제공 및 H/W, S/W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계열 전산SI회사와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은 상품·용역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4호)에 해당합니다.

2. 계열회사인 광고대행사에게 광고의 제작 및 집행을 전담시키고 있는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계열 광고대행사에게 제품 및 기업 브랜드 등 광고의 제작 및 집행을 의뢰하는 행위는 상품·용역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4호)에 해당합니다.

3.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20%, B사 발행주식의 20%, C사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사, C사는 상장법인, B사는 비상장법인임)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②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

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① 의 경우 A사, B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② 의 경우 B사, C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③ 의 경우 A사, C사는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4.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인 상품용역거래의 거래금액은 매출액만 포함되는가?

→ 동일인 및 동일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용역거래의 거래금액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매출액과 매입액 인식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릅니다.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5.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는 상품용역거래인지 자산거래인지?

→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콘도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하며, 콘도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다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은 자산거래에 해당됩니다.

6.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계열사와 물품보관계약을 하는 행위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지 여부

→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계열사와 물품보관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보관료를 수수하는 것은 물품보관용역을 제공하는 상품·용역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4호)에 해당

7.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19%를, C사 발행주식의 15%를 소유하고, A사는 B사 발행주식의 51%(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은 15%)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사는 상장법인, B사와 C사는 비상장법인임)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②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

시 의무 회사는?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 ②, ③의 모든 회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